

#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

##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2029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년월일: 2024년 9월 2일

제안자: 환경수자원위원장

### 1. 수정이유

- 서울시 1회용품 관련 시책의 내용이나 규모로 볼 때 민간위탁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, 자칫 시장의 책무를 민간에 떠넘긴다는 비판에 직면할 우려가 있는바, 민간위탁 규정 등을 삭제하고, 일부 조 제목 등을 문맥에 맞게 수정함.

### 2. 주요 골자

- 조 제목을 문맥에 맞게 수정함(안 제6조, 제7조).
- 민간위탁 규정을 삭제함(안 제7조제5항).

### 3. 참고사항: 생략

#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

##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6조의 제목“(공공기관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 제한 등)”을“(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제한 등)”으로 한다.

안 제7조의 제목“(민간 확산 등을 위한 지원사업)”을“(1회용품 사용 줄이기 사업 추진 및 지원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다만”을 “다만,”으로, “서비스공급”을 “서비스 공급”으로, “한한다”를 “한정한다”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.

안 제9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.

# 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제6조(1회용품 사용 제한 등) ① ~ ⑥ (생략)	제6조(공공기관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 제한 등) ① ~ ⑥ (현행과 같음)	제6조(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제한 등) ① ~ ⑥ (개정안과 같음)
제7조(지원사업) ①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 1. ~ 3. (생략) <신설>	제7조(민간 확산 등을 위한 지원사업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해 필요한 연구·조사 사업	제7조(1회용품 사용 줄이기 사업 추진 및 지원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1. ~ 3. (개정안과 같음) 4. (개정안과 같음)
4. ~ 5. (생략)	5. ~ 6. (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)	5.6. (개정안과 같음)
② 시장은 민간기관·단체, 법제 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자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추진 시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 <후단 신설>	② ----- ----- 제1항제5호의 사업에 대한 지원은 민간의 서비스공급이 취약한 지역으로 한한다.	② ----- ----- 제1항제5호의 사업에 대한 지원은 민간의 서비스 공급이 취약한 지역으로 한정한다.
③ ~ ④ (생략) <신설>	③ ~ ④ (현행과 같음) ⑤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전문적·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·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	③ ~ ④ (개정안과 같음) <삭제>
<신설>	제9조(1회용품 줄이기 우수업소·기업의 지정 등) ① (생략) ② ----- 1. (생략) 2.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시책 우선 지원 3. ~ 5. (생략)	제9조(1회용품 줄이기 우수업소·기업의 지정 등) ① (개정안과 같음) ② ----- 1. (개정안과 같음) <삭제> 3. ~ 5. (개정안과 같음)